



감독 대응 및 경영진 책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감사

자금세탁방지(AML) 전략 | 한국 딜로이트 그룹

“

자금세탁방지(AML)는 금융회사가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핵심 관리 영역입니다.
글로벌 제재 체계와 감독 기준이 상향되는
흐름 속에서 금융회사에는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감독당국에 입증될 수 있을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AML 감사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통제의 실효성과 경영진 책임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딜로이트는 차별화된 AML 감사를 통해
금융감독기관 대응과 경영진 책임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김선호 파트너

자금세탁방지 감사 서비스
회계감사 부문



Deloitte.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세 가지 경영·감독 리스크



자금세탁방지(AML)

금융기관이 의심거래를 식별·보고함으로써 범죄를 차단하는 핵심 제도

AML 규제 준수의 세 가지 경영·감독 리스크

01

경영진 제재 리스크

보고책임자가 임원급인 구조상,
대표이사의 감독자 책임 부담 가능성 확대

02

입증책임의 부담

사고 발생 시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이행에 대해 직접 입증 책임 부담

03

해외 규제당국에 의한
제재까지 확대 가능성

북한·이란 등 제재 대상 국가와 연계된
기업의 자금세탁은 해외 규제당국 제재로
확대 가능 (ABLV 사례: 미국 제재 후 파산)



상세한 내용은 리포트 전문에서 확인하세요!

강화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집행 환경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제도적 변화

기초법제화 및 FIU 창설

국제기준 수용과 동시에
가이드·교육 중심 감독을 통한
제도 정착 촉진

국제기준 반영·의무대상 확대

검사지침 구체화·과태료·
행정제재로 제재
실효성 강화

검사·제재 고도화

취약부문 집중검사 및
경영진 책임 강화

2001 「특정금융정보법」제정

2005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부과

2007 카지노사업자 대상
AML 적용 의무 부과

FATF 개정 권고¹

2012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구체화

2014 의심거래보고 의무 부과

FATF 요구 사항 반영²

2019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
AML 의무 부과

2021 G20 정상회의·FATF의 기준 이행 요구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AML 의무 부과

2024 이사회·경영진·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1. 고객확인제도 의무대상, 리스크 기반 접근, 자료보존 기준 등의 구체적 이행 촉구

2. 해외지점 및 자회사에 대한 AML 의무 부과, 위험기반접근법, 금융거래자료 보존, 일회성 금융거래 대상 고객확인,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 변경(1천만원), 의무 임직원 직무 수행 시 절차 및 지침 준수여부 감독 시행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기준 상향과 집행 기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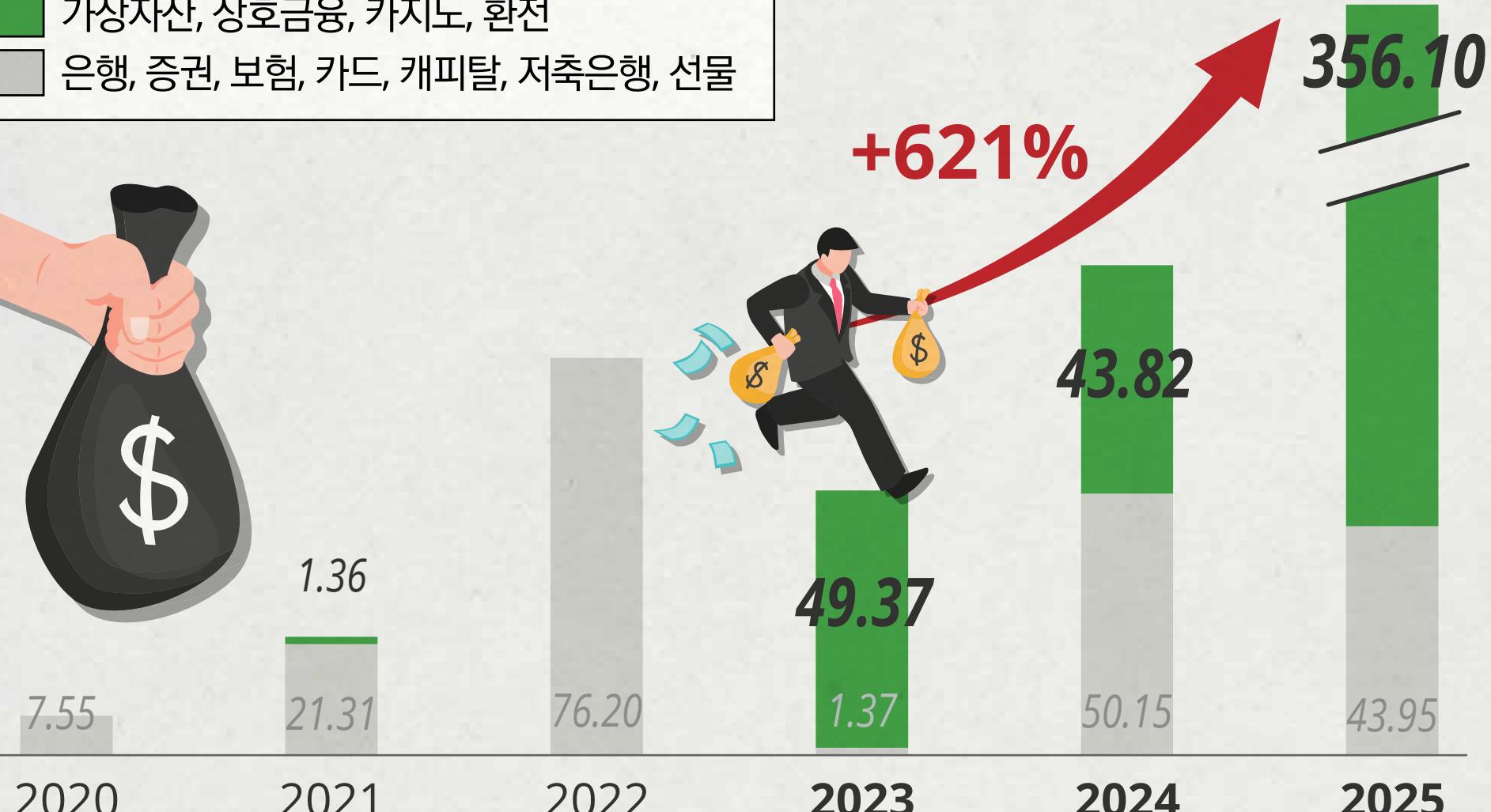
- ✓ 국제적으로 FATF를 중심으로 AML 기준이 상향되며,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상시 모니터링 중심 체계로 전환
- ✓ 국내외 감독당국은 고위험 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고액 제재를 적극 집행하는 무관용 기조로 감독·집행을 강화
- ✓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거나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고위험·취약업권의 과태료 비중 급증

자금세탁방지 제재 현황

기간별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억원)

 가상자산, 상호금융, 카지노, 환전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선물



자금세탁방지 집행 환경에서 요구되는 금융회사의 대응 역량



✓ 규정·시스템·거버넌스의 고도화

AML 규정·절차 상시 정비, KYC·거래모니터링·STR 데이터·자동화 강화, 책임 구조와 독립적 검증 체계 구축

✓ 인력·문화 기반의 통제 내재화

AML 전문 인력, 준법 문화를 통해 조직적으로 규제 부담 흡수

향후 감독당국의 자금세탁방지 방향성 (가설적)



규제의 일반적 준수 뿐 아니라
AML 체계 및 운영의
실효성 심층 평가



기존 검사 방향성

- 단순 법규 위반 사항 적발 위주의 형식적 준수 감독
- 규정 중심의 획일적 감독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업권으로의
감독 확대 및 업권별 리스크에 따른
감독 강도 차별화



은행

증권

보험

카지노

상호금융¹

전자금융²

가상자산³

...

1. 행정안전부 - 금융위원회 MOU 체결(2024.02)을 통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공조 강화
2. KoFIU 시장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심사·검사 강도 제고(2024.02)
3. 자금세탁방지 체계 준수 의무 부과 2년 경과, 현장검사 실시 예고(2022)

정확한 AML 감사를 위한 구조 개선 방안



- ✓ 독립적 AML 감사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유사한 제재 사유가 반복되는 것은 감사 구조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
- ✓ 문제는 개별 감사의 성실성이 아니라 감사 범위·시점·활용 방식 전반의 구조적 제약

기존 AML 감사 체계의 구조적 한계

한계 1 무엇을 못 보는가

- 샘플 기반 감사로 고위험 거래·시기적 편차 포착 한계
- 제3자·외부기관·공급망 리스크는 감사 범위 밖에 존재

한계 2 언제 놓치는가

- 연 1회 감사는 빠르게 변하는 규제·리스크를 따라가지 못함
- 감사 이후 발생한 취약점이 장기간 방치

한계 3 왜 고쳐지지 않는가

- 권고는 있지만 이행 책임과 완료 검증이 약함
- 표면적 조치만으로 근본원인 (Data·System·Culture) 미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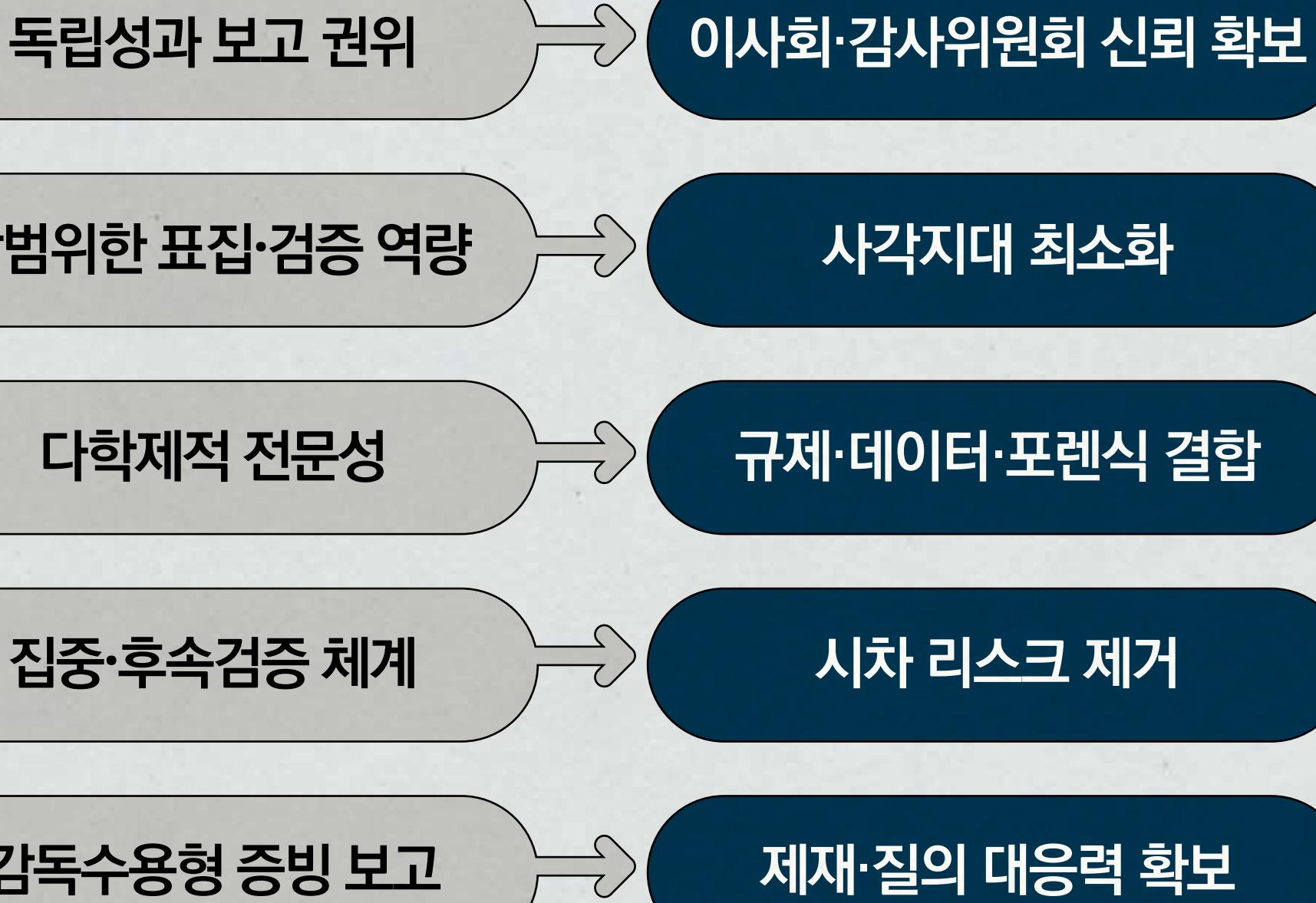
한계 4 왜 제재로 이어지는가

- '설계된 통제'와 '운영되는 통제' 간 괴리
- 데이터·시스템 품질, 인센티브 구조, AML 전문성 부족이 감독 대응 실패로 전이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감사의 가치

- ✓ 문제는 감사 유무가 아니라 설계·방식·전문성·시의성·이행 관리
- ✓ 외부 전문 감사는 통제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수단

딜로이트 AML 감사의 차별성



경영진과 감독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AML 검증

딜로이트 AML 감사 패키지



Audit Checklist

가중치 기반 핵심 통제



감사 보고서

신뢰의 근거



개선과제

지속 가능한 통제 내재화 조치

- ✓ 법령·정책 반영 체크리스트로 규제준수의 일관성 확보
- ✓ 위험평가·거래모니터링 등 핵심 통제를 가중치화하여 리스크와 우선순위 명확화
- ✓ 통제 설계와 운영의 이원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증

- ✓ 감사 범위·절차·검증 논리를 구조화하여 AML 통제 환경을 객관적으로 문서화
- ✓ 취약 지점·통제 미비·운영상 불일치를 근거 기반으로 제시
- ✓ 감사 의견·시정 권고·후속 모니터링을 표준화하여 이행 책임과 추적 체계 명확화

- ✓ 통제 공백·절차 왜곡·데이터 불일치를 원인별로 분류하여 개선 우선순위 재정립
- ✓ 룰셋 고도화, KYC 흐름 재설계, 증빙 자동화 등 실행 가능한 개선안의 단계적 적용
- ✓ 책임 주체·기한·KPI를 명확히 하여 개선 활동을 제도화하고 통제 고도화 지속

한국 딜로이트 그룹 산업 전문가

자금세탁방지(AML) 전략

자금세탁방지(AML) 전략은 독립적이고 증거 기반의 AML 감사를 통해 통제의 실효성과 경영진 책임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며, 규제 및 감독 이슈에 대해 일관되고 전문적인 대응 역량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반복적 제재와 감독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민홍기 대표

금융산업통합서비스 리더

📞 010 6279 4092

✉️ homin@deloitte.com



김선호 파트너

자금세탁방지 감사 서비스 | 회계감사 부문

📞 010 7401 1862

✉️ sunhkim@deloitte.com



염승원 파트너

규제 및 재무 리스크 리더 | 경영자문 부문

📞 010 3721 7613

✉️ syeum@deloitte.com



장형수 파트너

금융산업통합서비스 | 금융 부문 리더

📞 010 8898 3865

✉️ hyuchang@deloitte.com



정옥성 Senior Manager

자금세탁방지 감사 서비스 | 회계감사 부문

📞 010 4623 4689

✉️ okjeong@deloitte.com



서영교 이사

금융기관 자금세탁방지 자문 | 경영자문 부문

📞 010 7377 7850

✉️ younseo@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연구원

정옥성 Senior Manager

okjeong@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